

【 4 】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4. 10.

제출자 : 양주시장

1. 개정이유

- 양주시가 2003년 10월 19일 “군”에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역에 통장제가 신설되었으며
- 용어가 모호한 일부의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향토의 역사·예술상”을 “향토의 역사·예술적”으로 함
(안 제2조)
- 나. “이장”을 “이·통장”으로 함 (안 제10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증 “향토의 역사·예술상”을 “향토의 역사·예술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증 “이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문화재 보호법 및 경기도 문 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u>향토의 역사·예술상</u> 가치가 있는것과 이에 준하는 참고자료 2. ~ 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 --- <u>향토의 역사·예술적</u> ----- ----- ----- 2.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자 지정) ①시장은 향 토유적 소유자 또는 <u>이장을</u> 향 토유적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10조(관리자의 지정) ①----- ----- <u>이·통장</u> ----- ② (현행과 같음)

양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개정

개정구분 : 부분 개정

개정이유

양주시가 2003년 10월 19일 “군”에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역에 통장제가 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용어가 모호한 일부의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향토의 역사·예술상”을 “향토의 역사·예술적”으로 함 (안 제2조)
- 나. “이장”을 “이·통장”으로 함 (안 제10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문화재 보호법 제55조
-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조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시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관련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 문서
- 현행조례 (전문)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참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①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향토유적지정) 향토유적의 지정은 시장이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제6조(지정기준) 향토유적은 1945년이전 유적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1.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2.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제7조(보호구역설정) ①시장은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향토유적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제8조(고시) ①시장은 향토유적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설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장은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서교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향토유적지정서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지정) ①시장은 향토유적소유자 또는 이장을 향토유적관리자로 지정한다.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보존관리)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적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

2.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관리자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향토유적안내판 설치

3. 진입로 정비·경내 정화·보호시설물 설치

② 시장은 향토유적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향토유적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유적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수 요구하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향토유적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시 유적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을 연 2회이상 점검하고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각·공예품 등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유적을 이동하는 때에는 그 실황과 위치·이동사유·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도 등) ① 시장은 향토유적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와 향토유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유적) 제 호

향 토 유 적 지 정 서

위 치 :

명 청 :

수 량 :

위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적지정서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월일	유적지	지정 번호	지정 연월일	유적지 정내역	소재지 보관장소	소유자		보호 구역	관리자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성명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별지 제3호서식]

- 간판 규격은 문화재 간판 C형으로 한다.

- 내용

